

# 특별공급 청약안내문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년 11월 26일]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일정

신청일자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2024.12.09. (월) (09 : 00 ~ 17 : 30)	• 인터넷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2024.12.18.(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조회

※ 청약 신청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가입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 또는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발급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아크로 리츠카운티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해외건설 근로자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 자격	주택소유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기본자격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미성년자녀 2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1순위에 해당하는 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 1순위 해당하는 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및 1순위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가구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배정규모	85㎡ 이하의 10% 범위 내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	85㎡ 이하의 18% 범위 내	-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내	85㎡ 이하의 9% 범위 내
	배정세대수	14세대 중 12세대	14 세대	25 세대	14세대 중 2세대	4 세대	12 세대
	세대주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주		
	청약가능 면적	85㎡ 이하	전 주택형	85㎡ 이하	85㎡ 이하	전 주택형	85㎡ 이하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	적용
청약 통장	예치금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요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제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특별공급 청약안내문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4년 11월 26일]

청약관련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인허가 과정,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편집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li><li>※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li><li>※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li></ul>								
	<table><thead><tr><th>구분</th><th>처리방법</th></tr></thead><tbody><tr><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body></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li>-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li>- 노부모부양 / 해외건설 근로자(기관추천)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li>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의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봄(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제외)</li><li>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li><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li>-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li><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ul>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기타 사항은(유의사항 및 필요서류 등)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